한국생태학회 회장 및 부회장 선출 세칙

개정
2014년 9월 20일
2016년 9월 23일
2018년 2월 22일

제1조(총칙) 본 세칙은 한국생태학회 회장 및 부회장 선거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선거관리위원회의 임무 및 구성)

① 선거관리위원회(이하 선관위)는 선거에 관한 공고, 후보등록, 투표, 개표 및 당선자 확정 등 선거관리 업무를 관장한다.

② 선관위는 당해 연도 회장을 제외한 등기 이사(또는 이사회에서 추천한 회원) 3인, 회장 후보 당 추천인 1인(회장 입후보 후 위원으로 활동)으로 선관위 위원을 구성한다.

③ 선관위원장은 당해 연도 등기 이사 중 1인이 맡는다.

제3조(후보자 추천) 회장 및 부회장 후보자는 다음과 같이 입후보 한다.

① 회장 및 부회장 후보자는 본 학회 상임평의원 또는 평의원의 자격을 갖춘 자이다.

② 당해 연도까지 3년간 연회비를 완납하고, 학회 논문 및 활동 업적이 있는 자가 후보자가 된다.

③ 입후보자 등록은 소정 양식을 작성하여 학회 사무국에 이메일로 보내 등록한다. 등록 안내는 사전(최소 2주 전)에 공지한다.

④ 선관위는 입후보자가 확정되면 투표권을 가진 회원들에게 후보자들의 출마의견을 선거 이전에 공지한다.

제4조(선거운동) 후보자 공고 시 이력서와 선거공약을 모든 선거인단에게 일정기간, 일정횟수(이메일 및 홈페이지)공지한다.

제5조(투표권)

① 당해 연도까지 최근 3년간 연회비를 완납한 상임평의원과 평의원에게 부여한다. (단, 위촉기간이 3년 미만인 신임 상임평의원 또는 평의원의 경우, 위촉된 이후의 회비를 완납하면 투표권을 갖는다).

② 학회에서는 회비 납부 사항 확인 후 완납자에 한해서 투표지를 배부한다.

제6조(투표)

① 투표는 오프라인 투표로 한다.

② 회장 및 부회장 선출 투표는 회장단 임기 종료 2개월 전인 11월 1일 이전에 시행한다.

③ 후보자가 2인 이상인 경우 1인을 선택하는 투표를 진행하며, 단일 후보인 경우 찬반 투표를 진행한다.

④ 입후보자들에게 5분 이내 정견 발표 시간을 준다.

⑤ 발표순서는 회장, 부회장 입후보자 순이며, 가나다순으로 진행하도록 한다.

⑥ 투표는 회장, 부회장 투표를 동시에 진행하며, 기표는 회장 후보 1인, 부회장 후보 1인 기표한다.
⑦ 투표권이 없는 회원의 경우 참관이 가능하다.
⑧ 투표관련 서류는 2년간 학회 사무국에서 보관하도록 한다.

제7조(개표 및 당선자 결정)
① 개표는 투표 완료 후 회장 후보가 지정한 참관인의 입회하에 즉시 실시한다.
② 회장 당선자는 투표율에 관계없이 과반수 이상 득표자로 정하며,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경우에는 상위 득표자 2인을 대상으로 결선 투표를 실시하여 결정한다.
③ 부회장 당선은 15% 이상의 득표율을 얻은 후보 5명까지 당선자로 결정한다.
④ 회장 입후보자가 1인인 경우에는 총 유효투표 과반수의 찬성으로 당선자를 결정한다.
⑤ 선관위원장은 투표결과가 확정되면, 이를 평의원회와 총회에서 발표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.

제8조(감사 선출 및 기타)
① 감사 2인의 선출은 회장과 부회장 선출이 끝난 후 진행한다.
② 회장과 부회장 선출을 위한 평의원회는 회장이 소집하며, 재적 평의원 1/3이상의 출석으로 성원된다. (단, 서면 위임은 성원정족수 산정에만 유효하다.)
③ 이 외의 사항은 관례에 따르도록 한다.